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1370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버티

담당변호사 김종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청

담당변호사 김영빈

변 론 종 결 2024. 3. 14.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주위적으로,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의정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2. 5. 17.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대한민국(소관: 의정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경 D 주식회사 및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9108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1. 8. 20. 위 법원으로부터 “C은 D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2016. 9. 5.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2021.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그 가집행으로서 2021. 9. 13. 의정부지방법원 E로 C 소유의 구리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C은 의정부지방법원 2021카정124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후 2022. 4. 26. 그 담보로 위 법원에 10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그 무렵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해 위 부동산강제경매 절차는 정지되었다.

다. C은 2022. 5. 17. 피고에게 위 공탁금 100,000,000원의 출급 청구권(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다)을 양도하였고, 2022. 6. 8. 의정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라. 제1심 판결에 대하여 C이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18743호로 항소를 하였으나, 2022. 6. 7. C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22. 6.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정지되어 있던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재개를 신청하여 위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다시 진행된 결과 2022. 12. 26. 배당절차에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액 중 317,628,620원을 배당받았다.

바. 그 후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액 중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108,442,611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타채32296호로 C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 100,000,000원 및 그 이자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3. 4. 1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C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3. 5. 3. 위 법원은 위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주위적으로,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C이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적이 없어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인 C을 대위하고 있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무초과에 빠진 C이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C은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으로 납부한 후 그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위 공탁금을 회수할 권리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다.

C은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공탁금으로 납부한 후 피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위 금전 차용 직전의 C의 재산 상태와 피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 이후의 C의 재산 상태에는 변동이 없어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대물변제가 아니라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 내지 변제에 갈음하는 행위이고 C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받은 것도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650,000,000원 이상이었고 제1회 매각기일인 2022. 4. 26. 최저매각가격도 552,000,000원이었던 반면 C의 채무는 원고에 대하여 425,977,872원 및 주식회사 H에 대하여 69,999,307원 등 합계 495,977,179원을 넘지 않았으므로 C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는 채무자 C이 누구인지 및 그의 재산상태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대리인의 말만 믿고 C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변제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서 선의이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주위적 청구)

원고는 C이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적이 없음을 전제로 C이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적이 없어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C은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실제로 차용한 후 위 차용금을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 공탁금으로 납입하고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 내지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C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아무런 채권채무관계 없이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예비적 청구)

먼저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채무자의 무자력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채무자인 C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한 2022. 5. 17.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I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양평군청 및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22. 5. 17.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 및 소득이 없었던 사실, 그 당시 C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고의 C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따라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2021. 10. 4.을 기준으로 평가된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은 552,000,000원이었고, 이에 경매법원은 제1회 매각기일 및 최저매각가격을 2022. 4. 26. 552,000,000원으로, 제2회 매각기일 및 최저매각가격을 2022. 5. 31. 386,400,000원 등으로 각각 정하여 통지하였으나, 2022. 4. 26. C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결국 제1회 매각기일은 진행되지 아니한 사실, 한편 C은 2022. 5.경 당시 주식회사 H에 대하여 69,464,000원의 대출금 채무(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주식회사 H 명의의 채권최고액 8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로 보인다), J조합에 대하여 3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 2022. 12. 26.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425,977,872원의 판결금 채무 등 합계 525,441,87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2022. 5. 17.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 시가 552,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가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합계 525,441,872원의 채무가 있어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않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2. 5. 17.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위 경매절차에서 공고된 제2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인 386,4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제1회 매각기일이 실제로 진행되었다가 유찰됨으로써 제2회 매각기일이 진행 또는 진행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1회 매각기일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제출에 의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최저매각가격은 경매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당해 매각기일에서의 최저기준가격에 불과할 뿐 실제 매각가격을 반영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C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제2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인 386,400,000원으로 볼 수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감정평가액 겸 제1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인 552,000,000원을 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사해행위취소의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1).

가사 만에 하나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22. 4. 25. 대리인 K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22. 8. 14.로 각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는 그 당시 자신의 아들인 L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0매를 인출한 후 이를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1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C과 피고는 위 차용 당시 차용금 10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담보 공탁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되 C이 위 차용금을 공탁금으로 납부한 후 위 공탁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C은 2022. 4. 26. 피고로부터 차용한 위 100,000,000원을 의정부지방법원 2021카정124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담보로 공탁한 후 2022. 5. 17. 피고에게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22. 6. 8. 의정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 100,000,000원의 차용, 공탁금 납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은 그 전체가 C과 피고 사이의 하나의 금전차용약정에 따라 연속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이고,

시간적으로도 근접하여 이루어졌으며,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강제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하였던 것이고, 만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애당초 위 금전의 차용 및 그것을 통한 공탁금 납부 자체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따라서 그 중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만을 분리하여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때 C이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을 차용하기 직전의 재산 상태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한 이후의 재산 상태에는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사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C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환

별지

채권의 표시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 대한민국(소관: 의정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C이 2022. 4. 26. 의정부지방법원 2022금1851호로 공탁한 공탁금 100,000,000원의
출급청구채권

1)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C의 소극재산으로 C의 피고에 대한 100,000,000원 및 그 약정이자 상당의 차용금 채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만일 그와 같이 볼 경우 C이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로 공탁한 1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별지 목록 기재 채권)도 C의 적극재산에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그럴 경우 소극재산(100,000,000원에 대한 월 2,000,000원 상당의 약정이자 채무)이 더 늘어나기는 하나, 여전히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